

2) 고조기의 소작쟁의

(1) 1923년 봄의 지세반환 요구투쟁과 소작권이동 반대투쟁

순천군 14개 면의 농민들은 순천농민대회연합회를 조직한 뒤 1923년 2월경부터 본격적인 소작관계 개선투쟁을 벌여나갔다. 조직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이들이 제일 먼저 바로잡고자 한 것은, 지주가 납부해야 할 지세나 공과금을 소작인이 납부하던 관행이었다.

순천지역의 소작농민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년도분으로 이미 소작인들이 대납한 지세를 돌려받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미 받은 지세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부 지주들은 결의를 무시하고 지세를 돌려주려는 커녕 소작인에게 신년도 지세마저도 강징하고자 했다. 가령 동초면 대지주인 김병옥(金炳郁)과 월등면 대지주인 김학모(金學模)는 전년도분의 지세를 반환하기는커녕 면서기나 마름을 동원하여 지세를 내지 않으면 소작권을 이동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다니는 형편이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지역의 면단위 농민대회는 지주회의 결의를 명분으로 하여 강력한 지세반환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런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쌍암면·별량면·주암면·낙안면 등 소작인운동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는 지세반환이 잘 이루어졌으며, 지방청년회의 지주들은 이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가령, 낙안면의 경우는 면내의 각 지주들에게 지주대회의 결의대로 전년도에 세금을 소작인에게 돌려달라고 서면으로 통지도 하고 교섭도 하였다. 그러나 별로 효과가 없자 43명의 지주를 면사무소로 ‘청래(請來)’하여 지세반환증서에 서명날인을 받아냈을 정도로 성공적인 활동을 벌였다. 또한 지세반환 요구투쟁에는 순천군청도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순천군청은 몇몇 비협조적인 지주들에게 자발적으로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농민대회의 활동을 보조하였다.²⁾

1923년 2월과 3월에 진행된 지세반환투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자, 각 면의 농민들은 여세를 몰아 소작권이동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1923년 4월 19일에 개최된 순천농민연합회 총회(각 면 대표자회의)는, “지세를 반환치 아니한 지주의 씨명을 본월 27일 내로 본 연합회로 보고할 일, 지세를 추심할 위원을 각 면마다 2인씩 선정하여 27일에 협의 파송(派送)케 할 일, 무과실 소작이동에 대해서는 각 면회에서 처리 불능할 때에는 즉시 본 연합회에 통지할 일, 무과실 이작(移作)된 신소작인에게는 파종시비 등 무용의 지출을 맡게 할 일, (악지주 씨명을) 각 주요처(主要處)에 광고를 첨부할 일” 등을 결의하였다. 이는 1923년의 춘계투쟁에서 순천지역의 소작운동 주체들이 무엇을 목표로 투쟁하였는지를 보여준다.³⁾ 순천농민대회연합회는 첫번째와 두번째 결의를 통해서 2월과 3월에 진행된 지세반환투쟁을 마무리짓고, 그 여세를 몰아 곧바로 소작권이동 반대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했던 것 같다.

뒤이어 개최된 각 면 농민대회는 연합회의 결의를 더욱 발전시켜, 교섭과 진정이 결렬될 경우 공동경작투쟁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기세를 올렸다. 가령, 4월 10일 순천면농민대회는 소작관계 개선에 대한 일반적인 결의와 더불어 “무고 이작할 때에는 신소작인과 교제를 단절하며 노동에 불청하고 구소작인에게는 회원이 협력하여 경작케 할 것”을 결정하였다.⁴⁾ 순천면의 경우는 일본인 지주 등의 소작권이동에 반대하여 공동이양을 단행하였으며,

1) 『조선일보』 1923. 2. 15 · 『동아일보』 1923. 3. 23.

2) 『동아일보』 1923. 2. 23 · 1923. 3. 1 · 1923. 3. 7 · 1923. 3. 10 · 1923. 5. 17.

3) 『동아일보』 1923. 4. 27.

쌍암면에서도 무리한 소작권이동에 대항하여 4차례나 공동이양을 실시하였다. 특히 황전면의 공동경작투쟁은 상당히 치열한 면모를 보였다. 소작권을 빼앗긴 황전면 덕림리 농민 100여 명은 소작권이 박탈되자 공동묘포를 만들고 공동으로 파종까지 하였다. 이 같은 투쟁은 같은 면의 월산리, 선변리, 회룡리 등지에서도 발생하였다.⁵⁾

이처럼 조직적 저항이 강력해지자 순천군 지주들은 위력에 굴복하여 농민대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가령, 「소작쟁의도 점차 해결」, 「지세 반환 요구가 착착 실행, 대지주 몇 사람이 이때까지 상치 중」, 「각 군 소작대표의 강경한 교섭으로」 등의 『조선일보』 1923년 8월 5일자 기사는 당시의 분위기를 대체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김학모, 김희산, 조용현(趙溶鉉) 등 ‘악지주’들은 농민대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작권이동을 단행하였다. 당시 농민대회에서 ‘악지주’로 지목한 이들은 순천군 낙안면 지주 조용현, 월등면 지주 김종익, 보성군 벌교면 지주 김희산 등이었다.⁶⁾

한편, 보성·고흥·순천군의 대지주들은 1923년 3월 스스로 ‘삼군(三郡)연합지주대회’를 개최하고 대표자를 파견하여 도당국에 회견을 요청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 이들은 1,000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지주를 회원으로 하여 ‘전남흥농회(全南興農會)’를 결성한 뒤 7개 항의 결의를 채택하였다.⁷⁾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종래와 같이 지주를 도외시하지 말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 존중하여 줄 일, 소작료의 결정·분배에 대하여 옛날부터 오랫동안 관례에 의지하여 오늘까지 내려오는 것이니 관청에서 도무지 간섭하지 말 일, 소작인이 아닌 자가 소작인 단체에 가입하여 다른 선량한 소작인을 선동 또는 압박하여 공연히 부정을 일으킬 우려는 엄중히 취체하여 줄 일,⁸⁾ 지주를 대항키 위하여 조직된 소작인의 단체는 해산시킬 방침을 취할 일 등이었다. 이처럼 지주들의 반발이 강력하자 순천군청과 경찰은 1923년 여름부터 소작인조합의 주요 간부들을 업무방해·상해·협박·훼손 등의 혐의를 들어 검속하였다.⁹⁾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는 지주의 공세도 약했고, 경찰의 탄압도 그리 강력한 것이 아니었다.

4) 『조선일보』 1923. 4. 17 · 『동아일보』 1923. 4. 21.

5) 『동아일보』 1923. 5. 7 · 1923. 5. 14 · 1923. 6. 29 · 1923. 7. 7.

6) 『동아일보』 1923. 4. 10 · 『조선일보』 1923. 4. 16.

7) 『동아일보』 1923. 3. 12 · 1923. 3. 25 · 1923. 4. 30 · 1923. 5. 3.

8) 鈴木敬夫, 『法을 통한 조선 식민지 지배—식민지 치안법에 의한 민족교육과 독립사상의 탄압』,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일제가 ‘3자 개입 금지’를 실천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6. 4.)을 입안·실시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빌어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얻을 목적으로 폭력, 문서파기, 면회 요구,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9) 『동아일보』 1924. 4. 30. 당시 순천군청은 마지막 항의요구에 대해, “치안에 방해된다고 할 경우에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해산시킬 터”라고 답변하였다.